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(제 18388호, 21.8.10일 공포, 21.11.11일 시행)으로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,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.

이에,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,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(안 제43조의2)

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를 규정함

나.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사무 위탁(안 제96조제2항)

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를
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규제심사 예정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) 법 제45조제8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

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호 및 제2호”를 “제1호, 제2호 및 제2의2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관한”을 “관한 사무 및 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3조의2(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) 법 제45조제8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</u> 1.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2. 「<u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
제96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(생략)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<u>제1호</u> 및 <u>제2호</u>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. 1. 법 제108조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·운영에 <u>관한</u> 사무: 한국	제96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제1호</u>, <u>제2호</u> 및 <u>제2의2호</u>----- ----- ---. 1. ----- ----- <u>관한</u> 사무 및 법

부동산원	<u>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 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-- --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384